

2000. 2. 26(토)  
제57회임시회제4차본회의

제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 
심 사 보 고 서

總 務 委 員 會

# 제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

## 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0. 2. 16. 제 천 시 장
- 나. 회 부 일 자 : 2000. 2. 16.
- 다. 상 정 일 자 : 2000. 2. 23. (제57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회의)

## 2. 제안설명요지 (제안설명자 : 환경관리사업소장 이은춘)

### 가. 제안이유

- 개정된 하수도법 및 동법시행령, 동법시행규칙에 의거 배수설비 준공검사규정의 신설 및 수질환경보전법 규정에 따른 폐수량을 명시하는 단서신설과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른 일부 조문등을 정리하고자 하는 것임.

### 나. 주요내용

- 공공하수도 사용이 개시된 때에 배수구역내의 토지소유자등이 배수시설을 설치시 준공검사규정 및 준공검사신청서의 신설.
- 사업자가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폐수량측정기를 설치한 경우

기기에 의해 측정된 배수량을 하수 배출량으로 인정하는 내용 신설.

- 하수배제용 배수설비 설치시 원인자부담금 부과에 대한 조문 수정등.

### 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신태훈)

#### ○ 법적검토

- '99. 2. 8일 개정된 하수도법 제24조 제1항, 제3항에 따르면 “배수설비의 설치자가 그 설치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하수도관리청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” 라고 규정되어 있고,
- 동법 시행령 제1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1조에도 명시되어 있으므로 준공검사규정의 신설은 적법한 것으로 사료됨.
- 또한 수질환경보전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수량 측정기를 설치한 경우에 폐수 측정량을 동 기기에 측정된 폐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인정토록 함으로써 명확히 하는 것은 타당함.
- 아울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른 “오수정화시설 및 정화조” 를 “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” 등으로 적법한 범위내에서 조문정리를 한 것으로 판단됨.

#### ○ 행정적 검토

- 금번 개정코자하는 동 조례안은 모법의 개정에 따른 보완적 의미의

개정으로 환경부로부터 조례기준이 통보되어 '99. 7. 30일 충북도로부  
터(물관 67712-1117) 각 시·군에 시달된 것으로,

- 동 기준내용의 범위를 일탈하지 아니하였으며,
- '99. 12. 24일 입법예고 결과 이견이 없는등 걱정한 절차를 거친후,  
2000. 2. 12일 본 시의 “조례·규칙 심의위원회” 에서 원안가결된 사  
향으로 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판단되며,
- 동 조례가 개정된다면 하수도사용에 따른 보다 완벽한 관리가 이루  
어질 것으로 사료됨.

#### 4. 질의답변 요지

##### 가. 질의요지

- 1) 안 제13조 4항의 단서조항이 상당히 중요한 사항인데, 환경부 훈령  
으로 작년 7월에 내려왔는데도 늦게 개정하는 이유는?

(장기훈 위원)

- 2) 안 4조의2를 신설하게되어 배수설비 설치자가 준공검사서 신청시에  
1차, 2차 검사를 검사자가 현장확인하게 된 바, 사업소 인원으로 검  
사능력이 가능한지 여부?

(조병석 위원)

##### 나. 답변요지 (환경관리사업소장 이 은 춘)

- 1) 차후 개정요건 발생시 즉시 개정하겠습니다.
- 2) 이 사항은 철저히 시행하여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.

5. 토론요지

없 음.

6. 심사결과

“원안가결”

7. 심사보고 붙임서류

제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1부. 끝.